

1 보상 대상 제외 (확인요청 부지급)

※ 귀하의 「확인요청 결과통지」에 명시된 '보상금 부지급 사유*' 각각에 해당하는 필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* 보상금 부지급 사유 : ①소기업 미해당 ②방역조치 미이행 ③매출액 증가

① 소기업 미해당

- (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,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^{*}한 사업자

*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) 산정 기초자료 부족

< 참고 : '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소기업 요건 >

소기업 요건 (하나라도 미충족 시 소기업 미해당)	관련 법령	
	중소기업기본법	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❶ 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 이하	제2조 제2항	제8조 제1항(별표3)
❷ 중기업 이상인 타 기업과 지배 구조상 관계없음	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	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 및 제3조의2
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비영리법인	제2조 제1항 제1~5호	제3조 제2~5항
❹ 영업활동 중 (소기업 판단을 위한 매출액 확인 가능)	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등 손실보상제도 근거 법령 해석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	
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^{*}(필수), ▲소기업 증빙서류(필수, 7~8p 참조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소기업 초과" 또는 "소기업 판단 불가" 적시

[※ 소기업 증빙서류 : '소기업 미해당 사유(미충족 요건)'에 따라 구분]

① (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 초과)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

<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>

〈개인사업자〉

개업연월일 (사업자등록증 기준)		증빙서류 (ⓐ, ⓑ 모두 제출)
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<u>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</u>)	
~'18.12.31	일반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ⓐ “과세기간”이 ‘19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* (근거 법령 : 「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」) ⓑ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‘19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(근거 법령 :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시행규칙)
	간이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“신고기간”이 ‘19.1.1.~’19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19.7.1.~’19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③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④ “신고기간”이 ‘20.7.1.~’20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⑤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⑥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
	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“신고기간”이 ‘19.1.1.~’19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 ③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
'19.1.1~'19.12.31	일반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ⓐ “과세기간”이 ‘20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ⓑ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다음과 같이 ‘20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
	간이과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0.7.1.~’20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③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④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
	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0.1.1.~’20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
'20.1.1~'20.12.31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ⓐ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
	⑥ “신고기간” 또는 “과세기간”이 다음과 같이 ‘21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부가가치세 과세유형</th><th>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과세자</td><td>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</td></tr> <tr> <td>간이과세자</td><td>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</td></tr> <tr> <td>면세사업자</td><td>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사업장 현황 신고서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	일반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	간이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	면세사업자	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사업장 현황 신고서</u>
부가가치세 과세유형	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(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)								
일반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6.30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 ② “신고기간”이 ‘21.7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</u>								
간이과세자	① “신고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부가가치세 신고서</u>								
면세사업자	①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~’21.12.31.인 <u>사업장 현황 신고서</u>								
	⑤ “과세기간”이 ‘21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							
	⑥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 ①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③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(사업자등록증 기준)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								
‘21.1.1.~’21.12.31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개업연월일</th><th>회계기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‘21.1.1.~’21.11.30.</td><td>개업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</td></tr> <tr> <td>‘21.12.1.~’21.12.31.</td><td>개업연월일부터 ’21.12.31.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개업연월일	회계기간	‘21.1.1.~’21.11.30.	개업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	‘21.12.1.~’21.12.31.	개업연월일부터 ’21.12.31.		
개업연월일	회계기간								
‘21.1.1.~’21.11.30.	개업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								
‘21.12.1.~’21.12.31.	개업연월일부터 ’21.12.31.								

<법인사업자>

법인설립연월일 (법인등기부 기준)	증빙서류						
~’18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19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(근거 법령 : 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)						
‘19.1.1.~’19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20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
‘20.1.1.~’20.12.31	“사업연도”가 ‘21.1.1.부터 ’21.12.31.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
‘21.1.1 ~’21.12.31	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 ①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,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③ 이의신청자의 회사설립연월일(법인등기부 기준)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법인설립연월일</th><th>회계기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‘21.1.1.~’21.11.30.</td><td>법인설립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</td></tr> <tr> <td>‘21.12.1.~’21.12.31.</td><td>법인설립연월일 ~ ’21.12.31.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법인설립연월일	회계기간	‘21.1.1.~’21.11.30.	법인설립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	‘21.12.1.~’21.12.31.	법인설립연월일 ~ ’21.12.31.
법인설립연월일	회계기간						
‘21.1.1.~’21.11.30.	법인설립연월일 다음 달 초일 ~ ’21.12.31.						
‘21.12.1.~’21.12.31.	법인설립연월일 ~ ’21.12.31.						

② (중기업 이상인 타 기업과 지배 · 종속 관계) ‘주주명부’ 제출

③ (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) ▲‘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(❶ 유형’과 동일) ▲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~5호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*

*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

④ (영업활동 중이 아닌 경우) ‘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(❶ 유형’과 동일)

② 방역조치 미이행

- (대상)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(필수), ▲ 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군구 발급)
☞ 「붙임4」 참고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방역조치 미이행" 적시

③ 매출액 증가

- (대상) '19년 대비 '21년의 10~12월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(필수), ▲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만)
▲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만)**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 대상 제외"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 "매출액 증가"를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
 - ** 귀하의 '매출액 증가' 원인이 인프라매출액에 있는지, 현금보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가세신고매출액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지 확인한 후 증빙서류 확정 필요

< ①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 >

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를 받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(예시 : 수수료매장, 정부 지침에 따른 업종 변경 등 ☞ 17p 참고)

< ②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(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) >

개업연월일	사업자 유형	과세유형	증빙서류
19.11.30 이전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19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19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19.12.1~'20.11.30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20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'20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	전체 유형	전체 유형	자료 제출 불필요 (지역·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)

2 확인보상 부동의

※ 귀하의 확인보상금 산출 과정에 반영된 세부 항목* 중 정정을 희망하는 부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* 확인보상금 산출 세부 항목 : ①매출액 (인프라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)
②영업이익률 및 인건비·임차료 비중 ③방역조치 이행일수 ④시설분류

① 인프라매출액 정정 희망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**(해당자만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 "매출액 정정"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(특히 인프라매출액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)
 - **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를 받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(17p 참고)

②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정정 (또는 면세수입금액 정정) 희망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*(필수), ▲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 (필수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 "매출액 정정"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

<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(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) >

개업연월일	사업자 유형	과세유형	증빙서류
19.11.30 이전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간이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법인사업자	일반과세자	'19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19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	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19.12.1~'20.11.30	개인사업자	간이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	면세사업자	'20~'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		일반과세자	'20~'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
	법인사업자	면세사업자	'20~'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'20.12.1 이후	전체 유형	전체 유형	자료 제출 불필요 (지역·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)

③ 영업이익률, 인건비 · 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(A 타입)

(20년 이전 개업자 중 ▲법인세 및 종소세 기장신고자 또는 ▲추계신고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)

- (대상) 종합소득세 ·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 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(필수), ▲①경정된 종합소득세 · 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및 ②'필요경비 구성 변경' 증빙서류(필수)
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
<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: 신고 · 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>

신고 유형	기장 유형	개업연월일	서류 구분	증빙서류	
				명칭 (ⓐ~ⓒ 모두 제출)	대상 기간
신고 유형 별기	기장 유형 별기	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ⓐ표준재무제표	'19.1.1 ~ '19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	'19.1.1~ '20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ⓐ표준재무제표	'20.1.1 또는 개업일 ~ '20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기장 신고 간편장부	'21.1.1~ '21.12.31		해당사항 없음	
		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ⓐ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'19.1.1 ~ '19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	'19.1.1~ '20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ⓐ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'20.1.1 또는 개업일 ~ '20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		'21.1.1~ '21.12.31		해당사항 없음	
추계 신고	기준 경비율	'18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	ⓐ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	'19.1.1~ '19.12.31
			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

		'19.1.1~'20.12.31	①종소세 신고자료 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ⓐ추계소득금액계산서 (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) 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20.1.1 또는 개업일 ~'20.12.31
		'21.1.1~'21.12.31		해당사항 없음	
단순 경비율	해당사항 없음				

※ 필독 : 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

증빙서류 유형	'대상 기간'의 의미	주의사항 (필독)
종소세 신고자료	ⓐ표준재무제표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2호)	
	ⓑ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)	회계기간 ①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,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종합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를 의미 ②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“종소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”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회계사 자필로 써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
	ⓒ추계소득금액계산서 「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」 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)	 ③ 관할 세무서에 ▲수정신고, ▲경정청구 또는 ▲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ⓑ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	'지급연월' (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)
	ⓒ임대차계약서	계약서상의 '계약기간'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
	ⓓ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 ※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 계약서”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
		※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‘이체확인증(또는 송금확인증)’, ‘통장 사본’, ‘전자세금계산서(임대인,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)’여야 함

<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: 신고 · 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>

신고 유형	기장 유형	개업연월일	서류 유형	증빙서류	
				명칭 (@~@ 모두 제출)	대상 기간
기장 신고	복식 부기	'18.12.31	①법인세 신고자료 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ⓐ표준재무제표 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19.1.1 ~ '19.12.31
			①법인세 신고자료 ②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	ⓐ표준재무제표 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ⓒ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'20.1.1 또는 개업일 ~ '20.12.31
		'21.1.1~'21.12.31		해당사항 없음	
추계 신고			법인사업자는 추계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		

※ **필독 : 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**

증빙서류 유형	'대상 기간'의 의미	주의사항 (필독)
법인세 신고자료 ⓐ표준재무제표 (법인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3)	회계기간	<p>① 법인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, 소득·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를 의미</p> <p>②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“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”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·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</p> <p>③ 관할 세무서에 ▲수정신고, ▲경정청구 또는 ▲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</p>
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ⓑ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	'지급연월'(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)	-
ⓒ임대차계약서 ⓓ임차료 지출내역 (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)	계약서상의 '계약기간'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 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	<p>※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“임대차 계약서”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</p> <p>※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‘이체확인증(또는 송금확인증)’, ‘통장 사본’, ‘전자세금계산서(임대인,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)’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</p>

④ 영업이익률, 인건비 · 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(B 타입)

(▲ 종소세 추계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▲'21년 이후 개업자)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업종·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 · 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 - * 21년 이후 개업자 : ▲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'21.1.1.~'21.12.31. 사이인 개인 사업자 또는 ▲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'21.1.1.~'21.12.31.인 법인사업자를 의미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^{*}(필수), ▲^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②인건비 증빙서류 · ③임차료 증빙서류^{**}(필수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영업이익률 등 정정" 적시
 - ** ▲손익계산서와 ②인건비 · 임차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

< 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>

- ◇ (요건 1)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상법」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
- ◇ (요건 2) 세무사·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"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"는 문구가 세무사·공인회계사 자필로 쓰여 있어야 함 (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)
- ◇ (요건 3)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

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	회계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
'21.1.1.~'21.12.31.	개업한 날부터 '21.12.31.까지

☞ 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계산서만 인정

< ② 인건비 증빙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소득세법 시행규칙) >

- 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,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*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

* 동일한 기간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'지급연월' 기준

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	손익계산서 회계기간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
~'18.12.31.	'19.1.1.~'19.12.31.	'19년 1월부터 '19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19.1.1.~'20.12.31.	'20.1.1.~'20.12.31.	'20년 1월부터 '20년 12월까지(총 12개월차)
'21.1.1.~'21.12.31.	개업한 날부터 '21.12.31.까지	개업한 달부터 '21년 12월까지

< ③ 임차료 증빙서류 :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모두 제출) >

◇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임대차계약서

*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"임대차계약서"가 아니라면,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

◇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출내역 (다음 중 택일)
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·송금확인증 등 (명칭은 은행마다 다름)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*

*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출세금계산서)와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(=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모두 가능

5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(필수), ▲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군구 발급, 「붙임5」 참고), ▲시설분류확인서(해당자만 필수, 시군구 발급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방역조치 이행 일수 정정" 적시

※ (주의) '시설분류확인서'는 보상 대상 기간(21.10.1.~12.31.)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

☞ ①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, ②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
6 시설분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

- (대상)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- (제출서류) ▲이의신청서(필수), ▲시설분류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)
 - 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시설분류 정정" 적시

3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

- ◇ 손실보상금 산출 과정에 불합리한 왜곡을 일으키지만,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최초 지급 당시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이슈들입니다.
- ◇ 각 이슈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이의신청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◇ 아래에 소개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'이의신청서'에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① 수수료매장

- (개념) 가맹본부·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*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'소상공인·소기업'
- *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(신용카드 POS기 등)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수수료를 제한 다음 소상공인·소기업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
-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
 - (보상대상 제외) 모든 유형
 - (확인보상 부동의) ▲매출액 정정 ▲영업이익률, 임차료·인건비 비중 정정
- 추가 제출서류

증빙서류	참고사항	
(1) 손익계산서	<p>① '19.1월(또는 개업일)~'21.12월 손익계산서 ② 신고·기장 유형에 따른 분류</p>	
	기장신고	복식부기 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간편장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
	추계신고	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자료 중 '추계소득금액계산서 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참조) 단순경비율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 (별도 양식 제한 없음)
	※ 단, 21.1~21.12월분은 기장·신고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로 제출 필요 (별도 양식 제한 없음)	

(2)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서	① 19.1월(또는 개업일)~'21.12월 계약서 ② 계약서에는 임차료율, 수수료율 등 프랜차이즈 본사·대규모 유통업자와 개별 업체 간의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※ 계약서 '본문'과 '별첨'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제출해야 완전한 증빙 가능													
(3) 매출액 정산 내역 (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)	① 19.1월(또는 개업일)~'21.12월 매출액 정산 내역 ② 매출액 정산 내역에는 총판매금액, 임차료 금액, 카드수수료 금액, 정산금액,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※ 즉, 총액(고객의 최초 결제 대금 총합)과 순액(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 총합)이 정산 내역에 모두 포함될 필요													
(4)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증빙자료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개인사업자</td> <td>일반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>간이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법인사업자</td> <td>면세사업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</td> </tr> <tr> <td>일반과세자</td> <td>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면세사업자</td> <td>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</td> </tr> </table>	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간이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법인사업자	면세사업자	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면세사업자	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
개인사업자	일반과세자	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	
	간이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		
법인사업자	면세사업자	19~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												
	일반과세자	19~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												
	면세사업자	19~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											

*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

②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변경

- (개념) 정부 지침에 따라 업종 등을 변경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

* 예) 체육시설법령(문체부 소관) 개정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업의 업종 변경을 권고 받아 사업자 폐업 처리 후 재등록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뀐 상황

-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

- (보상대상 제외) 모든 유형
- (확인보상 부동의) 매출액 정정

- 추가 제출서류

순번	증빙서류	필수여부	발급처
1	폐업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	필수	
2	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(법인)	필수	
3	[문체부]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(업종* 표시 必)	필수	지자체

* 「체육시설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한정(참고자료)

4 그 밖의 신청 유형

① [방역조치 위반 정정]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·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·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
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(필수), ▲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(필수, 시·군·구 발급, 「붙임6」 참고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"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" 적시

② [보상금 환수]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(필수), ▲ 이의신청 소명자료***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환수"로 체크

** 소명자료 검토 이후,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

③ 담당자 착오

- (대상)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,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

* 휴대전화·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,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·군·구 방문 시,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

- (요건 ①)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·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
- (요건 ②)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지급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,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

※ (주의)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(형법 제137조), 사기죄(형법 제347조)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
- (제출서류) ▲ 이의신청서(필수), ▲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(필수, 시군구 발급, 「붙임7」 참고) ▲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***(필수)

* 이의신청 사유를 "손실보상금 금액"으로 체크하고, 상세내용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

** "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"는 10~17쪽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